

광명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정	1991. 4. 8	조례 제 668호
개정	1997. 5. 13	조례 제1030호
	2004. 3. 10	조례 제1338호(의회위원회조례)
	2007. 10. 10	조례 제1559호(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)
일부개정	2015. 4. 3	조례 제2053호
일부개정	2015. 5. 28	조례 제2079호
일부개정	2015. 9. 30	조례 제2125호(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22. 1. 24	조례 제283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10. 10, 2022. 1. 24>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97. 5. 13, 2004. 3. 10, 2007. 10. 10, 2015. 4. 3, 2015. 5. 28, 2015. 9. 30, 2022. 1. 24>

1. 부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, 과장급
3.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
4.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
5. 그 밖에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

부칙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. 5. 1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3. 10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② 생략

부칙 <2007. 10. 10 조례 제1559호,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광명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광명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를 “광명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“제37조”를 “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제113조 내지 116조”로 한다.

④ 내지 ⑦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2015. 4. 3 조례 제205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5. 28 조례 제207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9. 30 조례 제2125호,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. 24 조례 제283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